

국민취업지원제도 안내사항 (25.5.2)

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2유형)과 취업성공수당 중복 지원 불가

추경 예산 반영으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2유형)의 지원기준이 아래와 같이 변경됨에 따라 취업성공수당과 중복지원 불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2유형(청년 근속인센티브): (기존) 근속 18·24개월차 240만원씩 지급
→ (변경) 6·12·18·24개월차 120만원씩 지급(480만원 총액은 동일)
<참고>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2유형은 '25.1.1 이후 취업자 대상 지원사업임

- * 1개월 초과 근속유지 요건이 있고, 정부 및 지자체에서 지원금을 주는 경우 중복지원 불가(단, 타 사업이 12개월을 초과하는 근속요건만 있는 경우 취업성공수당 지급기간과 중복되지 않으므로 중복지원 가능)
- 청년 빈일자리 특화 취업지원프로그램 취업성공수당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2유형) 수급자는 중복지원 불가

2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규정(고시) 개정 예정 ※ '25.6.2. 시행예정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규정(고시) 개정을 통해 별표1 취업취약계층의 취업지원서비스 수급 요건 일부 변경 및 별표3 선발형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기준 변경 예정

- '25.5.8~28 행정예고 후 발령일부터 시행 예정('25.6.2 시행 예정)
- 고시 개정 관련 업무처리기준, 기준점수 변경 여부 및 변경 기준점수는 추후 공지
- 자세한 내용은 개정안 설명자료 참조(붙임1)

3 구글코리아 AI 에센셜 교육 구직활동인정기준

구글코리아와 업무협약을 통해 청년 5만명에게 구글 AI 에센셜 교육 제공

- 8시간 분량의 온라인 교육으로 수료 시 인증서 발급
- 온라인 직업훈련 수료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동 훈련과정 참여를 구직활동계획에 반영 시 인증서 발급일 기준 구직활동 1개 이행으로 인정
- 교육에 관한 사항은 붙임2 참조

4

금융·고용연계자 중 추천서, 확인서(확약서) 등 발급자에 한하여 II 유형 특정계층으로 참여 가능

국민취업지원 운영규정(고시) 별표1 취업취약계층 8. 신용회복지원자 등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회복위원회,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정책서민금융 등을 이용하는 자로서 추천서, 확인서(확약서), 회생결정문이 있는 경우 II 유형 특정계층으로 참여 가능

- 신복위, 서금원 등에서 워크플러스전산망을 이용하여 연계한 자는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 대상자가 아닌 경우도 있어, 반드시 추천서, 확인서(확약서), 회생결정문을 확인하고 취업취약계층(특정계층)에 해당하는지 확인

5 청년 예술인 지원사업 관련 판단기준

지자체별로 청년 예술인 지원사업이 다양함에 따라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수급자격) 국취와 같이 구직활동을 목적으로 정부·지자체에서 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이 아니며, 직접일자리사업이 아닌 경우 수급자격 인정
- * 예술인 등록자에 한하여 예술활동을 하거나 예술활동을 준비하는 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구직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 (신고소득) 구직활동을 목적으로 지원받는 수당이 아니면 취업지원·구직활동 지원 프로그램 참여로 발생한 수당으로 볼 수 없음 - 신고소득 아님
- (취업성공수당과 중복) 1개월 초과 근속유지 조건이 있지 않으면 취업성공수당 지급 가능

□ 가정 밖 청소년 포함, 법령 개정 반영 등 취업취약계층 요건 조문 정비(별표1 개정)

○ ‘위기청소년 등’의 범위를 확대하여 가정 밖 청소년* 중 ‘청소년 복지시설을 6개월 이상 이용한 15~34세 구직자’ 포함

* 가정 내 갈등·학대·폭력·방임, 가정해체, 가출 등의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청소년으로서 사회적 보호 및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청소년복지지원법 제2조제5호)

- 현 지원대상인 ‘위기청소년 등’에는 보호(종료)아동(15~34세), 진로가 불안정한 가출 청소년(15~24세)이 포함되어 있으나,

- 가정 밖 청소년으로서 일정 기간 시설을 이용하는 등 취업 지원이 절실한 청소년(15~34세)을 취업취약계층으로 포함할 필요

○ 일자리안정자금 사업 종료(‘22.6.)에 따라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이직자’를 ‘저임금 근로자였던 실직자’로 명칭 변경

*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요건을 완화하여 지원하기 위해 사업자가 실제로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 받았는지와 무관하게 요건에 해당하면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격 인정

○ 타법 개정에 따른 문구 변경 등 조문 정비

유형	변경사항
① 자유무역협정 피해 실직자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구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24.2.)에 따라 관련 문구 변경
② 국가유공자 가구원 중 취업지원 대상자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구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21.1.)에 따라 관련 문구 변경
③ 구직단념청년	「구직자취업촉진법」개정(‘23.8.)에 따라 대상 연령 확대 및 병역기간 반영
④ 청년	「구직자취업촉진법」개정(‘23.8.)에 따라 대상 연령 확대 및 병역기간 반영

현 행	개정안
9. 위기청소년 등: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청소년 상담 및 보호시설의 추천서, 제적 증명서, 자퇴서 또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중 어느 하나를 발급받을 수 있거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원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가. ~ 라. (생략) <신설>	9. 위기청소년 등: ----- ----- -----추천서, 청소년복지시설의 확인서, 제적----- -----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을 6개월 이상 이용한 사람 가운데 15세 이상 34세 이하로서 취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
10. 자유무역협정 피해 실직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무역조정지원기업을 운영하다 폐업한 사업주 또는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무역조정지원근로자로서 실직하였거나 주 30시간 미만 일하고 있는 경우	10. 자유무역협정 피해 실직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 -----통상변화대응지원근로자----- -----
12. 국가유공자 가구원 중 취업지원 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또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제1항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로서 보훈(지)청으로부터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	12. 국가유공자 가구원 중 취업지원 대상자: ----- ----- -----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 ----- -----
15. 구직단념청년: 18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서 「고용정책 기본법」 제15조의2에 따라 구축·운영되는 고용정보시스템상 신청일 이전 2년 동안의 교육·훈련·근로 이력이 100일 미만인 사람 가운데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구직단념청년 집중취업지원 필요도 점수가 21점 이상인 경우	15. 구직단념청년: 15세 이상 34세 이하 (법 제6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병역의무 이행기간을 가산하는 경우에는 영 제2조제5항에 따른 기간을 가산한 나이로 한다)인 사람으로서 ----- ----- -----
16. 청년: 18세 이상 34세 이하로서 가구단위의 월평균 총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20을 초과하는 사람	16. 청년: 15세 이상 34세 이하 (법 제6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병역의무 이행기간을 가산하는 경우에는 영 제2조제5항에 따른 기간을 가산한 나이로 한다)로서 ----- ----- -----
20.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이직자: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 다. (생략)	20. 저임금 근로자였던 실직자: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 다. (현행과 같음)

□ 재산, 취업 경험 반영 강화 등 선발기준 개선(별표3 개정)

- 현재 선발형 자격 기준의 경우 소득에 비해(최대 20점 차이) 재산(최대 6점), 취업 경험(최대 4점) 점수 차이가 매우 작은 상황
- ‘재산’은 소득에 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고, ‘취업 경험’은 구직자의 취업 의지, 필요성을 반영하는 지표라는 측면에서 배점 차이 강화 필요
- 특히, 1인 가구 청년 중에도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청년과 생계를 위해 반복적 아르바이트를 하는 등 수당이 절실한 청년 간 차별화 필요
- 선발기준을 개정하여 재산, 취업 경험 배점을 각각 최대 16점까지 차등
- 더불어, 취업경험 판단 기준으로 ‘취업한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 대신 ‘2년 이내 취업일수(시간)’를 기준으로 구분

〈 현 행 〉				〈 개 정 안 〉			
구 분	내 용	점 수		구 분	내 용	점 수	
		비경합	청년특례			비경합	청년특례
가구단위 월평균 총소득	가구단위 월평균 총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	40	50	가구단위 월평균 총소득	가구단위 월평균 총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	40	50
	가구단위 월평균 총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초과 50% 이하	30	45		가구단위 월평균 총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초과 50% 이하	30	45
	가구단위 월평균 총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초과 60% 이하	20			가구단위 월평균 총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초과 60% 이하	20	
	가구단위 월평균 총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초과 80% 이하	-	40		가구단위 월평균 총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초과 80% 이하	-	40
	가구단위 월평균 총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80% 초과 100% 이하	-	35		가구단위 월평균 총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80% 초과 100% 이하	-	35
	가구단위 월평균 총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초과 120% 이하	-	30		가구단위 월평균 총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초과 120% 이하	-	30
재산의 합계액	재산의 합계액이 1억원 이하	30	30	재산의 합계액	재산의 합계액이 1억원 이하	30	30
	재산의 합계액이 1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27	27		재산의 합계액이 1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22	22
	재산의 합계액이 2.5억원 초과	24	24		재산의 합계액이 2.5억원 초과	14	14
미취업기간 또는 취업준비 기간	신청일 이전 1년 이내에 취업한 사실이 있는 경우	30	20	미취업기간 또는 취업준비 기간	신청일 이전 2년 이내에 취업한 기간이 총 60일(또는 480시간) 이상인 경우	30	20
	신청일 이전 1년 초과 2년 이내에 취업한 사실이 있는 경우	28	18		신청일 이전 2년 이내에 취업한 기간이 총 30일(또는 240시간) 이상, 60일(또는 480시간) 미만인 경우	22	12
	신청일 이전 2년 이내에 취업한 사실이 없는 경우	26	16		신청일 이전 2년 이내에 취업한 기간이 총 30일(또는 240시간) 미만인 경우	14	4
자녀	미취학연령의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가산점 5점 부여	가점 5점	가점 5점	자녀	미취학연령의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가산점 5점 부여	가점 5점	가점 5점
유사 제도 및 사업 수혜	신청일 이전 1년 이내에 제8조의 사업에 참여하거나, 제9조의 지원을 받은 경우	감점 10점	감점 10점	유사 제도 및 사업 수혜	신청일 이전 1년 이내에 제8조의 사업에 참여하거나, 제9조의 지원을 받은 경우	감점 10점	감점 10점
	신청일 이전 1년 초과 2년 이내에 제8조의 사업에 참여하거나, 제9조의 지원을 받은 경우	감점 5점	감점 5점		신청일 이전 1년 초과 2년 이내에 제8조의 사업에 참여하거나, 제9조의 지원을 받은 경우	감점 5점	감점 5점
구직의사 및 건강상태	구직의사가 없거나, 건강 상태로 인해 즉시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는 구직촉진수당 수급대상에서 제외			구직의사 및 건강상태	구직의사가 없거나, 건강 상태로 인해 즉시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는 구직촉진수당 수급대상에서 제외		

붙임 2

AI 에센셜 강의 개요

□ 개요

- AI의 작동원리, 프롬프팅 기법 등 AI를 통한 생산성 향상을 지원 하는 기초교육으로 관련 지식·경험이 전혀 없어도 수강 가능

□ 구성

- 총 학습시간 8시간 내외로 수료 가능하며, 5개 모듈(총 47개 영상, 16개 읽기자료, 5개 평가과제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모듈 1. AI 소개

모듈 2. AI 도구로 생산성 극대화하기

모듈 3. 프롬프팅 기법 알아보기

모듈 4. AI를 책임감있게 사용하기

모듈 5. AI 시대에 앞서 나가기

□ 수료증 제공

- 수료시 인증서 제공(링크드인으로 연동해, 구직활동시 활용 가능)

<강의 화면>